



광산구



수신자 수신자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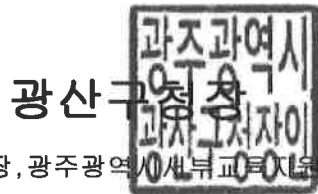
(경유)

제목 2019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신청안내 협조 요청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관련하여 저소득 가정의 아동 중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들에게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3. 급식지원을 필요로 하는 아동의 보호자가 해당 기간 내에 급식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안내문 및 신청서를 산하 각 학교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겨울방학 아동급식 신청안내】	
<p>□ 신청기간 : 2019. 11. 18.(월) ~ 11. 29.(금) (평일 10일간, 토?일?공휴일 제외)</p> <p>□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p> <p>□ 신청방법 : 방문 및 온라인 신청</p> <p>□ 제출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서식1호), 건강보험 납입증명서 등</p> <p>□ 지원방법 : 전자카드(급식비 충전)</p> <p>※ 2019년 여름방학 중 급식지원을 받았던 아동은 자체 확인조사를 통해 2019년 겨울방학에도 계속 지원여부를 결정하오니 재신청할 필요 없음.</p> <p><u>단, 거주지가 변경되었을 경우는 신청 안내</u></p>	

붙임 2019년도 겨울방학 급식지원 신청안내(교육청홍보) 1부. 끝.



광산구

수신자 광주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교육장, 광주광역시교육감(재정복지과장)

주무관 서윤희 팀장 이화영 노인장애인아동과전결 11/13 김진학

협조자

시행 노인장애인아동과-58210 (2019. 11. 13.) 접수 평생교육복지과-9856 (2019. 11. 13.)
우 62430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산로29번길 15 /http://www.gwangsan.go.kr
전화 062-960-8412 /전송 062-960-3712 / yoonh25@korea.kr / 공개

2019년도 겨울방학 중 급식지원 신청안내서

□ 급식지원 신청방법

♣ 2019년 겨울방학 아동급식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방법으로 아동급식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문 및 온라인 신청 : 주소지 해당 동 행정복지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신청

○신청기간 : 2019. 11. 18.(월) ~ 2019. 11. 29.(금) 18:00

※ 평일 10일간, 토·일 제외

○ 제출서류

- 아동급식 신청서(서식 1호) 및 자세한 서류는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 신분증, 건강보험증, 건강보험 납입 영수증, 저소득증빙서류 등
- 부모의 질병·장애여부 증빙 가능한 의사 진단서, 근로시간 명시한 고용주 확인서, 보호자 부재 여부 확인 가능한 이웃 또는 통장의 확인서 등(지원사유에 따라 제출 서류 상이)

□ 급식지원 방법

○ 지원방법 : 전자카드 배부 (급식비 충전, 1식 단가 4,500원)

□ 동 행정복지센터 아동급식 담당 공무원 연락처

관할 동	담당자	전화번호	관할 동	담당자	전화번호
송정1동	박영민	960-7608	신가동	김아영	960-7741
송정2동	오아름	960-7619	운남동	강정인	960-7767
도산동	이슬기	960-7622	신창동	김지은	960-7775
신흥동	김보현	960-7638	수완동	오동희	960-6467
어룡동	변정숙	960-7957	하남동	최경진	960-7813
우산동	김희	960-7940	임곡동	김은아	960-7828
월곡1동	이슬아	960-7950	동곡동	임유라	960-7832
월곡2동	전고운	960-7687	평 동	정지화	960-7958
비아동	유가영	960-7969	삼도동	송하나	960-7859
첨단1동	안호성	960-7707	본량동	박명량	960-7862
첨단2동	정수지	960-7729	광산구 아동복지팀	서윤희	960-8412

□ 급식지원 대상자 선정기준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단, 18세 이상인 경우에도 고등학교 재학 중인 아동, 18세 미만 학교 탈락아동의 경우 포함

○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하여야 함.

(1)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보호자의 식사제공이 어려워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결식우려의 정의) 보호자가 충분한 주식과 부식을 준비하기 어렵거나, 주·부식을 준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 먹기 어려운 경우

※ 외국국적 아동인 경우에도 지원기준에 따라 결식우려가 있을 경우 급식지원

-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 계층 아동
- ②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 ③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④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자가 없는 가구의 아동
- ⑤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하거나 보호자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으로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⑥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⑦ 위 각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최저 건강보험료 납부액 이하 가구 아동 또는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아동(※꿈자람카드와 중복지원 불가)

《2019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

가구원수	중위소득 52%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원)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1인	887천원	29,400원	6,450원	31,460원
2인	1,511천원	49,740원	13,550원	50,580원
3인	1,955천원	63,300원	21,890원	64,050원
4인	2,399천원	77,550원	44,170원	78,200원
5인	2,842천원	92,130원	70,640원	93,270원
6인	3,286천원	106,570원	96,300원	107,640원
7인	3,730천원	121,530원	115,250원	122,960원
8인	4,174천원	135,300원	133,510원	137,060원
9인	4,618천원	150,840원	151,910원	152,840원
10인	5,061천원	163,880원	168,080원	166,540원

- 1. 1인가구는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므로 결식우려 여부만 판단하여 지원
- 2. 지역가입자는 최저보험료 납부 가구를 포함한 것으로 지역가입자 2인 가구의 경우, 대상 아동 선정 시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필요 (단, 보험료 납부액이 10,640원 이하는 아동급식위원회 결정 불요.)

※ 2019 여름방학 급식지원자는 자체 확인조사를 통해 2019년 겨울방학 지원여부를 결정하오니 재신청할 필요 없음.

(단, 재판정에서 탈락한 경우에 다시 급식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신청해야함)

※ 신청 후 지자체 조사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신청 후 소득수준 등 지원대상자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별도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